

Deloitte Insights

September 2025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 향후 전략은?

Richard Rosenthal 외 20인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은행과 비은행 모두가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 03

결제지급용 스테이블코인(PSC) 규제 프레임워크 05

지니어스법 통과에 따른 잠재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 11

은행 부문 전략: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서 PSC 경쟁우위의 단계적 확보 12

비은행 부문 전략: 강화된 규제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민한 대응 필요 14

결론: PSC 도입과 금융산업의 전략적 대응 15

서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은행과 비은행 모두가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

2025년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지니어스 법')이 제정되면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 payment stablecoin)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¹

지니어스법은 PSC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은행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감독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또한 PSC 발행 기관은 기존의 은행 규제와 유사한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을 충족해야 하며, 연방 및 주(州)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은 PSC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PSC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넘어 미국 내외에서 자금의 정의, 거래, 활용 방식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 규제 당국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 제정 자체가 이미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심화하며,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금융 부문과 더 넓은 경제 전반을 변혁시키는 획기적 진전임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망(payment rail)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어, 자금 이체·결제·정산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보다 보수적인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PSC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²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듯 PSC가 "미국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확대할 것"³으로 기대되는 만큼, PSC는 이미 미국 정부의 국가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은행과 비은행 모두 이번 법이 현재 및 미래의 사업 기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다기능 리더십 팀을 구성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SC 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방향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다섯 가지의 주요 전략 경로를 택할 수 있다.

1. 발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협력 구조에 합류

직접 PSC 발행사가 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행에 참여한다.

2. PSC 시장 활동 촉진

전자지갑, 결제망,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 등 인프라를 통해 PSC 거래를 지원한다.

3. 거래은행 및 준비금 관리 지원 제공

PSC를 법정화폐와 연동(off-ramp, 스테이블코인을 실물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 서비스 및 준비금 관리 역량을 제공한다.

4. 기존 상거래에 PSC 활용 통합

현행 상업 거래 프로세스에 PSC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통합한다.

5.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 추진

토큰화된 예금 상품을 개발·운영해 PSC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

은행 리더들은 PSC 열풍 속에서 PSC와 차별화되는 토큰화 예금⁴⁾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PSC를 담보로 한 대출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PSC가 은행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토큰화 예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제·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십 팀의 전략적 선택과 필수 이행 과제

PSC 도입의 속도와 확산률 평가 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관찰 포인트로 주목된다.

- ✔ PSC 보안성과 사용성에 대한 기업의 행태 및 인식 변화(예: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이동이 안전한가?)
- ✔ 지갑(wallet) 개설 과정의 마찰(friction, 예: 복잡한 신원확인 절차, 보안 검증, 미성숙한 사용자 경험, 법적 불확실성) 수준
- ✔ 플랫폼 및 비은행 주체의 PSC 사용 촉진 전략(예: PSC 사용 시 1% 보상 혹은 수익 제공 여부)
- ✔ 리워드나 기타 인센티브 제공의 허용 범위와 제한
- ✔ 현금 등가물로 분류할 것인지,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PSC 회계처리의 명확성
- ✔ 세제 처리의 명확성
- ✔ 정부의 PSC 사용 촉진 정책 방향
- ✔ PSC 정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시장 및 인프라 발전

고객 기대가 빠르게 높아지는 만큼,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평가하며,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새롭게 전개되는 경쟁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필요 역량을 파악하면 명확한 실행 과제 또한 정립할 수 있다. 우선 재무팀과 결제 및 은행 부문 리더가 주도하고 다기능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전담 실행 조직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복잡한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결제지급용 스테이블코인(PSC) 규제 프레임워크

1. 미국 연방 최초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의의

지니어스법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연방 차원의 법적·규제적 틀을 최초로 마련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법은 PSC(지니어스법에 따라 정의된 결제지급용 스테이블코인)가 본질적으로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상품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PSC를 증권, 상품, 투자계약과 구분 짓는 것으로, 100% 준비금이 요구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SEC의 입장과의 일치한다.⁵

또한 본 법은 PSC 발행기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고 적격성을 갖춘 기관만이 발행·운영·상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PS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PSC의 법적 정의 및 발행기관 자격 요건

본 법에 따르면, PSC는 “요구 시 고정된 화폐가치(예: 미 달러 또는 기타 명목화폐)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주된 목적은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다.

PSC가 투자 상품이나 은행 예금의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PSC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발행자가 준비금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익을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 형태로 배분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은 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리워드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PSC는 연방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자는 이러한 자산이 정부 보증 또는 연방 예금보험으로 보호된다고 암시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PSC가 전통적 예금상품과 구분되는 성격을 갖도록 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아울러, 법은 PSC 발행 자격을 다음과 같은 경로로 규정하였다.

- ✓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기관(IDI,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의 자회사
- ✓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립은행
- ✓ 외국은행조직(FBO, foreign banking organization)의 미국 연방 지점
- ✓ 연방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
- ✓ 주(州) 정부가 인가한 발행기관(단, 발행 규모 상한은 100억 달러로 제한)

이와 같은 발행 경로는 제도권 내 다양한 금융기관 및 비은행 기관이 PSC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된 자격과 감독 체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PSC 규제 감독 체계

본 법은 PSC 발행자의 법적 실체 구조에 따라 주요(primary) 규제기관을 지정하는 공동 규제 감독(shared regulatory oversight) 체계를 수립했다.

- ✔ **IDI 자회사가 PSC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IDI의 연방 주요 은행 규제기관이 PSC 발행기관의 주요 규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 **연방 자격을 갖춘 PSC 발행기관(예: 국립은행, FBO의 미국 연방 지점, 연방 인가 비은행)의 경우:** 통화감독청(OCC)이 주요 연방 규제기관으로 지정된다.
- ✔ **주(州) 정부의 인가 발행 경로(state-chartered pathway)도 가능하나, 다음의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 주 차원의 규제 체계 하에서 PSC 발행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주의 규제 체계가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법상 PSC 규제 프레임워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substantially similar)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 주 인가 PSC 발행기관이 총 발행액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 규제 체계로 이전해야 하며, 주 규제기관에서 연방 지정 PSC 규제기관으로 주요 감독 권한이 이전된다. 다만, 해당 연방 규제기관이 제4조 제C항 제4목 면제조항 [Section 4, Subsection (C)(4) Waiver]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 주 인가 PSC 발행기관은 계속해서 주 차원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체계는 발행기관의 법적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독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PSC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PSC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철저히 규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이 발행·관리·상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 PSC 준비금 및 검증 요건

PSC 발행자는 최소 1:1 비율로 PSC에 상응하는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준비금은 다음의 고품질 유동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으로 한정된다.

- ✓ 미국 화폐(주화 및 지폐)
- ✓ IDI에 예치된 요구불 예금
- ✓ 만기 93일 이하의 미 재무부 증권
- ✓ 익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 ✓ 정부 머니마켓펀드
- ✓ 주요 연방 규제기관이 승인한 기타 유사한 연방 발행 유동성 자산

이는 PSC 발행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PSC 보유자가 요구 시 언제든지 자산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다. PSC 발행자는 다음의 준비금 운용 제한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 **준비금 운용 제한:** PSC 발행사는 준비금을 담보 제공이나 재담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재사용도 금지된다. 이는 PSC 보유자의 상환권 보호와 유동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제 조치이다.
- ✓ **월간 확인 보고(attestation) 의무:** PSC 발행사는 월말 기준 준비금 구성 및 발행 PSC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식 등록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PSC 발행사의 CEO와 CFO가 인증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 ✓ **파산 시 우선권 부여:** PSC 발행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지니어스법은 미국 파산법(US Bankruptcy Code)을 수정하여, PSC 보유자가 PSC 발행사 또는 다른 청구권자보다 PSC 준비금에 대한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 조치는 PSC 보유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및 법적 준수 체계 구축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5. 결제 처리업체(payment processor)에 대한 규제 영향

지니어스법은 PSC 발행사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개·지원하는 결제 처리업체에도 중요한 규제 영향을 미친다. 법은 PSC를 금융기관이 활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합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준수 조치를 요구한다.

✓ 핵심 요구 사항

- 감사 통제(audit control) 체계 구축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고객확인(KYC, know-your-customer) 프로그램 시행
- 법적 필요 시 토큰을 동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확보

✓ 발행사와 처리업체 역할 구분

- 발행사(issuer): PSC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불가능
- 커스터디(custodian)/처리업체(processor): 보상 프로그램 제공 가능

✓ 리스크 관리 및 기술 요구 사항

- PSC 관련 거래를 수행하는 기관은 엄격한 위험관리, 법적 준수, 암호 키 관리의 유지가 필수
-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암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준수형 커스터디 솔루션 필요

✓ 최근 규제 지침 사례

- 2025년 7월 14일, 통화감독청(OCC) / 연방준비제도(FED)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활동에 대한 규제 기대 사항을 공동 발표
- 이 지침은 비은행 결제 처리업체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도 적용 가능한 핵심 원칙을 명확히 규정

이와 같이, PSC 관련 결제 생태계 참여 기관은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법적·규제적 책임과 위험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수다.

6. 은행 유사 규제 체제

지니어스법은 전통적 은행 규제를 모델로 한 은행 유사 규제 체계를 PSC 발행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제 당국

- 연방 규제기관이 PSC 발행사에 대한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시행할 규칙을 제정
- 주 인가 발행사의 경우, 해당 주 규제기관이 연방 규제 기준과 연계하여 적용

✓ 핵심 규제 요소

- PSC 발행사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 요건
- 준비금 자산의 분산 투자
- 발행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위험 프로필에 맞춘 맞춤형 규제

✓ 금융기관 지위 및 준수 요건

- PSC 발행사는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 상 금융기관으로 간주
- 연방 차원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심사 대상
- 이를 위해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프로그램 구축과 특정 거래 차단, 동결, 거부 기능을 갖춘 기술적 대응 체계 필요

이러한 규제 구조는 PSC 발행사를 전통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투명성·안전성을 갖춘 결제 수단 제공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설계됐다.

7. 발효 시점 및 전환 기간

지니어스법은 제정 후 18개월 경과 시점인 2027년 1월 또는 최종 규정 발효 120일 이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효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허용된 PSC 발행사만이 미국 내에서 PSC를 발행할 수 있다.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전환 기간

-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이후에는 허용된 PSC 발행사가 발행한 PSC만 미국 고객에게 제공 또는 판매 가능

✔ 비은행 기관의 OCC 인가 신청 관련 규제 세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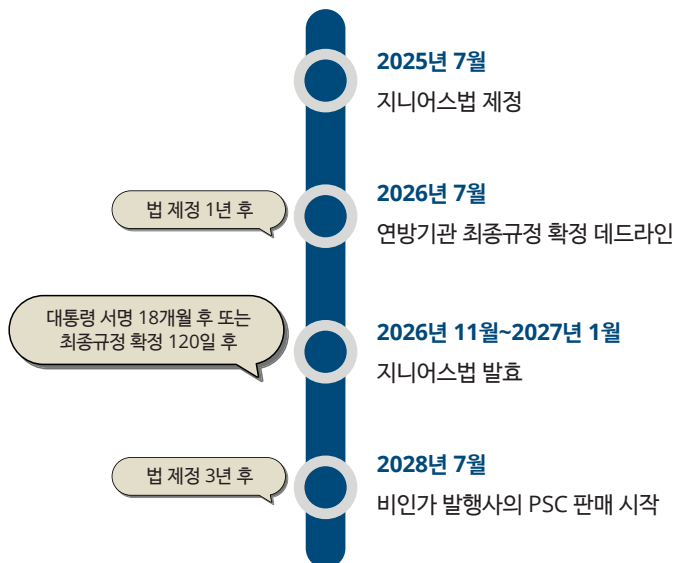
- 연방 기관이 발행 예정인 규정에 따라, 비은행 기관이 OCC 인가를 신청할 때의 세부 절차 및 적용 요건이 명확히 제시될 예정
- 규제 진행 상황 및 OCC의 비은행 기관 대상 구체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

✔ 신청 준비 전략

-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2026년 초~중반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장 참여자는 규제 프로세스 진행 상황에 맞추어 신청서 핵심 구성 요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규정 발효 즉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이러한 전환 계획과 준비 전략은 금융기관 및 비은행 PSC 참여자 모두에게 시장 선점과 규제 준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1: 지니어스법 발효 타임라인



지니어스법 통과에 따른 잠재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PSC와 디지털 자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은행과 비은행 간 PSC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핀테크 및 비은행 PSC 발행사들은 이미 통화감독청(OCC)의 전미 신탁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가를 얻으면 연방준비제도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⁶ 이렇게 되면 비은행이 전통적인 은행 결제망을 중개기관으로 거치지 않고 미 달러를 결제 및 청산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기존 은행의 결제 흐름과 관련된 수수료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PSC 시장에서 비은행의 지배적 위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다수의 비은행, 그 중에서도 주요 소매기업들은 PSC 생태계 진입을 위해 사업 모델과 제품 전략 수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소매기업들은 결제를 간소화하고 결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PSC 또는 공동 브랜드 PSC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통적 은행들과 비교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경험이 더욱 풍부한 비은행 기관들은 PSC 지갑을 내세워 차세대 자금 흐름을 전통적 은행으로부터 빼앗아 오기에 유리하다. 비록 지니어스법은 PSC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은행 발행사들은 스테이킹(staking)* 및 로열티 프로그램과 같은 대체 인센티브를 통해 PSC 활용을 촉진하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 또한 현금 흐름 관리, 유동성 개선, 재무 운영 간소화를 위한 잠재적 대안으로 PSC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PSC를 활용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거의 즉각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 결제망의 고질적 문제인 결제 지연 및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통적 은행 계좌와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가 보관 또는 하위 신탁 지갑을 기반으로 PSC로 가치를 보유하고 이전할 수 있다.

한편 PSC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전통적 은행 예금 규모가 더욱 줄어, 은행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 및 이자 수익 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존 자금관리 상품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환하고, 기관 고객의 지급 서비스, 수취 관리, 결제 상품 등에 PSC를 활용하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 스테이킹(staking)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은행 부문 전략: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서 PSC 경쟁우위의 단계적 확보

앞으로 은행들은 PSC가 기존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수익 및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과 동시에 고객 관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은행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PSC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

1. 시장 내 포지션 정립 및 참여 방식 결정

우선 경영진은 소속 기관이 PSC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합의를 통해 설정하고, 이를 전략적 목표, 위험 선호도, 규제 의무와 정렬해 자사의 사업 모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선택한 역할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각 경로는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맞춤형된 역량과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⁷

- ✓ 자체 PSC 발행 또는 컨소시엄 기반 PSC 발행
- ✓ 제3자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술 인프라(예: 지갑, 스마트 계약 등을 위한 API 통합)를 지원함으로써 PSC 결제를 촉진
- ✓ 커스터디(custody, 수탁) 서비스 또는 기타 준비금 관리 서비스 제공
- ✓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예금 솔루션 개발

2.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핵심 역량 확보

전략적 경로를 결정한 후에는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과 필요성을 정의하기 위해 형식을 갖춰(pro forma) 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기술, 인재, 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운영 역량 전반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수반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잠재적 격차를 파악하여 해소하고, 기존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⁸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상품의 기반이 되는 기초 상품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춰 수행해야 하며,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 도구 도입, 블록체인 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직원 역량 강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PSC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3.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역량 확보

이러한 PSC 관련 고유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포괄적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역량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 운영, 사이버 보안, 사기, 평판, 준비금, 디페킹(de-pegging)* 리스크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준비금 관리, 투명성 유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세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 잠재적 위험을 탐색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 노출 수준을 정의함으로써,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역량을 운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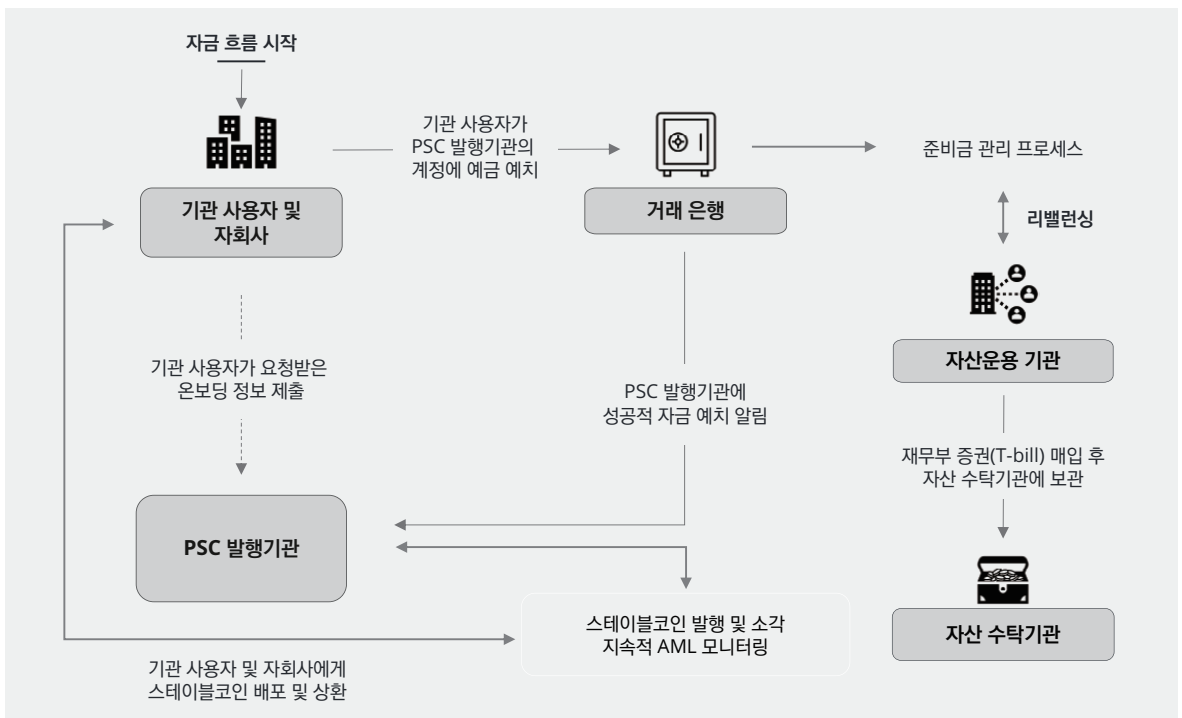
* 디페킹(de-pegging)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1코인=1달러와 같은 고정된 페그에서 이탈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해치는 현상을 뜻한다.

4. 상품 개발 및 출시

이후 상품 개발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지 아니면 제3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PSC 솔루션을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상품은 공식적인 신상품 승인 절차를 거쳐 내부 거버넌스 구조와 정렬해야 하며, 기존 워크플로우에 효과적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경쟁사와 비교해 명확히 차별화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3자와의 전략적 협력은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블록체인 통합, 사이버 보안, 규제 준수 등 특정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품 개발 이후에는 통제된 환경에서 신규 상품을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 출시가 필요하다. 파일럿 단계가 완료되면, 전면적 제품 출시 단계로 나아가 PSC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때 원활한 전환을 위해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조율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 모니터링, 선제적 리스크 관리, 변화하는 시장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2: PSC 자금 흐름의 거시적 경로



비은행 부문 전략: 강화된 규제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민한 대응 필요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비은행 발행사 또한 연방 규제 금융 생태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PSC 시장에 진입하려는 비은행 기관들은 리스크, 규제 준수, 운영 역량을 신속히 고도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강화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시장 내 포지션 정립 및 참여 방식 결정

비은행 기관들 또한 다양한 전략적 경로로 PSC 시장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발행사가 되거나, 가장 적합한 파트너십 모델을 모색할 수 있으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존 플랫폼에 PSC를 통합하는 최적의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다.

2. 건전한 리스크 및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 확립

규제 당국은 이미 PSC 영역에 진입한 비은행 기관들에 대해 동의명령(consent order)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비은행 기관 또한 각각의 규모와 복잡성에 맞춰 안전하고 건전한 리스크·규제 준수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SC 발행사는 고품질 유동자산(HQLA)으로 뒷받침되는 1:1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은행 수준의 자본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SC 발행사는 엄격한 은행비밀법(BSA)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공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경우, 거래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 과정이 광범위한 참여자 네트워크에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한다. 즉,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되거나 일명 '노드에 대한 식별'(know your nodes)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은행 기관들은 고객 실사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BSA/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시스템과 분석 역량을 도입해야 한다.

3.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 평가

또한 비은행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자사의 역량을 평가하여, 유동성 관리, 자본 관리, BSA/AML 분석, 운영 리스크 관리, 사기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은행업' 규제 요건, 리스크 관리, 자본 및 유동성 관리, 디지털 자산, 규제 준수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4. 은행 부문과의 전략적 협업

한편 은행과 비은행 모두 협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은 소매기업 및 비은행 기관과 협력하여 고객에게 지갑(wallet)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은행 기관은 은행이 보유한 검증된 리스크 관리 전문성과 심층적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은 비은행이 보유한 첨단 기술 인프라(예: PSC의 송수신 및 보관을 위한 지갑 인터페이스와 AP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측 모두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결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결론: PSC 도입과 금융산업의 전략적 대응

금융 서비스 산업은 지니어스법의 요건과 이로 인해 창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해 왔다. 지니어스법은 디지털 금융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예: 상호운용성에 관한 산업 차원의 표준, 지갑 보안, 포괄적 데이터 관리 등 핵심 영역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 이 획기적인 입법은 보다 확실하고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주도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지니어스법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상당하다. 스마트 계약 코드의 취약성,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침해 및 공격 가능성, 블록체인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의 진화 등이 대표적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따른 기회를 잡으려면, 기술적 통합 역량,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민첩한 상품 개발, 디지털 자산 관리 전문성 등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실행력과 지속적인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제공자 및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PSC가 전통적인 통화와 유사하게 기능하더라도, 세법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고유한 복잡성이 발생함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 업데이트(ASU) 2023-08의 디지털 자산 관련 지침은 대부분의 PSC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회계 및 재무보고 측면에서도 복잡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발행자, 보유자, 매개자 또는 프로세서 등 PSC와 관련된 주체의 역할에 따라 회계 및 보고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PSC와 관련된 이러한 고유한 복잡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혁신적 기술 솔루션, 컴플라이언스 지원, 전략적 자문 서비스 등 생태계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패러다임 전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업계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미래 결계 시장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막 시작된 PSC 시장 경쟁, 신중하고도 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주석

1. US Congress, "[S.1582 - GENIUS Act](#)," accessed July 18, 2025.
2. 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Full Committee Hearing with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June 11, 2025.
3. The White House,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January 23, 2025.
4. Tokenized deposits are a digital representation of actual bank deposits held on the bank's balance sheet (potentially making funds available for lending or investing), backed by 1:1 fiat currency (e.g., US Dollar) thereby not at risk of "breaking the buck."
5.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tatement on Stablecoins](#)," April 4, 2025.
6.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Exploring 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charters for fintech companies](#)," December 2016.
7. Please refer to Deloitte's publications "[Digital asset risk management diagnostic](#)," for insights on identifying digital asset and blockchain risks and "[2025 - The year of payment stablecoins](#)," for insights on the evolving digital asset landscape.
8. One of Deloitte's industry-leading tools is a digital asset risk assessment designed to help organizations identify digital asset-specific risks that need to be mitigated to engage in the marketplac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gulatory expectations and overall risk assessment objectives. Learn more about the tool [here](#).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분야 종합 자문 서비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업의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전략적, 기술적,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게임,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전략적 인사이트와 회계감사, 리스크, 세무자문 및 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업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환의 여정에서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김경호 파트너(센터장)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30

Email: kyoungkim@deloitte.com

Audit & Assurance



공선희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64

Email: sgong@deloitte.com



박영범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066

Email: youngbpark@deloitte.com



김선호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17

Email: sunhkim@deloitte.com



이진 수석위원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954

Email: jlee36@deloitte.com



윤현숙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22

Email: hyyun@deloitte.com



황지현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40

Email: jihwang@deloitte.com



김지영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2796

Email: jiyoungkim3@deloitte.com



한세리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208

Email: serhan@deloitte.com



성백준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367

Email: basung@deloitte.com



김영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268

Email: youngjaekim@deloitte.com



정옥성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52

Email: okjeong@deloitte.com



최영지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2021

Email: yeongjchoi@deloitte.com

Strategy, Risk & Transactions



김혜미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Tel: 02 6099 4288

Email: hkim21@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Tel: 02 6676 2125

Email: syeum@deloitte.com

Technology & Transformation



이동기 파트너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1963

Email: dlee31@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3625

Email: sanghyan@deloitte.com



임태수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3867

Email: tealim@deloitte.com



신지윤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2057

Email: jiyoshin@deloitte.com

Tax & Legal



김영필 파트너

세무자문 부문

Tel: 02 6676 2432

Email: youngp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딜로이트 인사이트 | krinsightsend@deloitte.com
디지털자산센터 | krdac@deloitte.com

연구원

김선미 Senior Manager
seonmi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